

파생결합증권[사채] 핵심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파생결합증권[사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는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간이)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청약 전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 보유 여부에 따라 전문금융소비자/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307회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금융상품의 내용	파생결합증권[사채]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손익조건에 의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 유가증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직원이 제공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파생결합증권[사채]은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와 달리 정해진 손익조건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약정된 수익률만 지급합니다. 또한 선취(또는 후취)보수가 있는 펀드와 달리, 청약에 따른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	<p>Q1. 이 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없습니까? 다음과 같은 발생가능한 상황에 따라 원금지급형 상품도 원금손실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사채]은 발행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상품이므로 발행사의 신용위험 등(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기타 천재지변 등)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Q2. 만기 전 중도상환이 가능 합니까? 중도상환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만기 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p> <p>○ 중도상환 금액 :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신청일이 본 증권의 발행일 1년 미만인 경우 연 3.900% 에서 연 1.00% 를 차감한 금리를 기준으로, 액면금액과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사유 등의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중도환매금액은 액면금액과 함께 연 3.900% 를 기준으로 경과일수로 계산된 수익금액을 지급합니다.</p> <p>*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3. 퇴직연금 제도전환 4.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경우</p>

	<p>5. 퇴직연금 가입 법인의 합병/영업양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p> <p>6. 퇴직연금 가입법인의 파산 및 폐업으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p> <p>7.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p> <p>8.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임 및 계약위반의 경우</p> <p>Q3. 이 상품의 과세는 어떻게 됩니까?</p> <p>과생결합증권[사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발생한 이익분배 한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p> <p>다만, 퇴직연금(DC, IRP)에서 투자한 경우 적립(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으며, 퇴직연금 수령단계에서 과세됩니다.</p> <p>당 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판매사는 원금 및 이자를 보전해드리지 않습니다.</p> <p>본 상품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p>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	낮은위험(5등급)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본 상품은 [원금지급형 과생결합사채]로 6등급 중 [낮은위험(5등급)]에 해당합니다. 원금지급형에 해당하지만 발행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낮은 위험(5등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분류 및 유의사항

당사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원금초과손실형 과생결합증권	위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위험)	◇ 원금비지급형 과생결합증권 (원금비지급형 ELS는 손실금액이 원금을 초과 할 수 없고, 판매시 손실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하며, 상품구조를 확인 받으므로 고객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음)	위험 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 높은위험)	◇ 원금부분지급형 과생결합증권 (80%이상~90%미만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만 적용하며, 그 이하는 원금비지급형으로 적용함)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위험)	◇ 원금부분지급형 과생결합증권 (90%이상~95%미만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만 적용하며, 그 이하는 원금비지급형으로 적용함)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위험)	◇ 원금부분지급형 과생결합증권 (95%이상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만 적용하며, 그 이하는 원금비지급형으로 적용함)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 낮은위험)	◇ 원금지급형 과생결합증권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기대수익	사전에 정해진 손익조건에 의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 유가증권입니다. 제시된 수익률은 상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에 불과하며 당사가 상환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본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발행사의 신용위험, 권리내용의 변경 및 조정 등에 따라 최대 투자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매직원이 제공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관련 사항	만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신청 가능일 : <u>발행일의 익일부터 매 영업일</u> (단,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또는 만기평가일(불포함) 이전 4 거래소 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부터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 또는 만기평가일(포함)까지는 중도상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u>중도상환가격결정일(불포함)로부터 2 영업일</u> - 중도상환가격결정일 : <u>중도상환신청일의 다음 거래소영업일</u>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모든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조건	본 상품은 정해진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종료됩니다.
연계 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신영증권 플랜업 제 307 회(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수익률 모의실험)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만기상환 1	연 3.91%	0	0.000%
만기상환 2	연 3.90%	5,437	100.000%
진행중		0	0.000%
Total		5,437	100.000%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투자시점이 2001년 04월 16일부터 2024년 04월 15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1년 04월 16일)로부터 분석기간동안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5,437회)

주3) 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증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성명(직급)	대표번호
연금기획팀	김승룡(팀장)	080-851-8282

• **민원 관련 사항**

- 처리대상 민원

구분	내용
금융민원	금융업무에 대한 고객 및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진정 또는 요청사항
기타민원	금융업무에 대한 단순한 질의, 건의 등 금융민원 이외의 모든 사무

- 금융민원 사무: 소비자보호팀

구분	성명(직급)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서경희(부장)	02-3772-8033	02-6971-2705	198606964@hanwha.com

- 기타민원 사무: 관리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

관리지점	지점명:	직위:	성명:	연락처:
고객지원센터	080-851-8282			

- 금융민원의 접수

① 회사에 민원 접수

- ✓ 금융민원은 문서, FAX,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외부 기관에 민원 접수

- ✓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한국거래소	02-1577-2172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 회사에 접수된 금융민원의 처리 절차: 접수 후 14영업일 이내 처리



* 외부기관 민원 처리절차는 해당기관 절차에 따름

•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관련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46조(청약의 철회) 또는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법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철회 또는 위법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사항

고객님께서 투자 하신 금융상품이 “청약철회 대상 상품”에 해당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 대상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아래상품

1. 투자성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단위형),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
2. 대출성상품: 신용공여(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청약자금대출)

① 청약 철회의 기한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 가.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 나.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

② 청약 철회의 행사방법

- ✓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리지점에 내방하셔서 “청약철회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지점에 제출

③ 청약 철회의 효과

- ✓ 조건 등이 부합하는 경우 당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청약한 전액(원금, 수수료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이미 받은 금전 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청약 철회권의 적용 제외

- ✓ 고객님의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계약/청약한 금액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가. “즉시운용 신청서”에 직접 서명,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동의 한 경우
 - 나. 전화(녹취)를 통해 동의한 경우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

고객님께서 금소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위법계약 해지 기간

- ✓ 고객님의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가. 단, 계속계약 상태여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②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방법

- ✓ 고객님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시고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근거 자료를 첨부하셔서 관리지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의 효과

- ✓ 위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고객님의 통지 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이 행사되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지효력이 발생한 날의 종가 기준으로 평가된 금액을 해지수수료 또는 위약금 없이 반환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고객님께서 금소법 제 2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자료열람요구권)할 수 있습니다.

① 자료열람요구권 행사방법

- ✓ 고객님의 “자료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관리지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자료열람 가능 기한

- ✓ 보관기간 10년 이내(일부 자료는 5년 내) 열람 가능합니다.

③ 자료열람의 통지

- ✓ 금융회사는 자료열람 요구서 수령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법령에서 정하는 열람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연락금지요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고객님께서 금소법 제 21조의2에 따라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연락금지요구권 행사방법**

- ✓ 고객님의 향후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080-851-8282)에 요청하시거나, 금융권 공동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넛콜)을 통해 행사 가능합니다.
- ✓

[주의] 고객님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이행확인	본 파생결합사채 상품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판매직원	한화투자증권 직위 :	지점 (전화번호) 직원명 : (서명)
